

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약 약관 목차

제1조 특약의 목적 및 적용범위

제2조 특약의 소멸

제3조 피보험자의 증가 또는 감소

제4조 약관 등의 교부

제5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임의해지

제6조 준용규정

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약 약관

※ 이 특약의 약관 본문 내에서 참조하는 모든 법령은 별첨 ‘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제 1 조 [특약의 목적 및 적용범위]

- ① 이 특약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·유지되는 상품의 구매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(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하며, 이하 ‘해당계약’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 이 경우, 상품판매자를 해당계약의 계약자(이하 ‘계약자’라 합니다)로 하며, 피보험자의 수는 5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② 제 1 항의 상품의 구매자란 각종 재화,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(이하 “상품의 구매자”라 합니다)를 말합니다.

제 2 조 [특약의 소멸]

- ① 이 특약은 이 특약을 체결한 이후 피보험자의 수가 5 명 미만이 된 경우,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- ② 피보험자가 상품의 구매자 집단에서 탈퇴하였을 경우,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.
-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, 회사는 제 5 조 [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임의해지] 제 2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제 3 조 [피보험자의 증가 또는 감소]

계약자는 이 특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

제 4 조 [약관 등의 교부]

회사는 해당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여 드립니다. 다만,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,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서류를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.

1. 계약자가 요청한 경우
2.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
3.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 5 조 [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임의해지]

- ① 계약자는 해당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가 해당계약을 해지할 경우, 회사는 해당계약의 ‘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’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 또한,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시점에 따라 해당계약의 ‘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’에 따른 미경과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.
-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해당계약에 대하여 회사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, 회사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해당계약의 임의해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계약을 해지하며 이 사실을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알립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제 2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④ 제 3 항의 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해당계약의 임의해지 권한을 위임한 사실’이란 계약자가 해당계약에 대하여 임의해지 권한을 피보험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.

제 6 조 [준용규정]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